

강원도립대학교 지속적 교육품질 관리(CQI)에 관한 규정

(제정) 2013-10-28 규정 제340호

(개정) 2015-11-13 규정 제373호

(개정) 2016-02-18 규정 제387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(개정) 2016-05-13 규정 제407호

(개정) 2018-02-12 규정 제489호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의 제반 교육운영체계를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활동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품질을 지속해서 유지 발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.<개정 2016.4.25.>

제2조 (용어) 이 규정에서 정하는 ‘지속적 교육품질 관리’, 즉 CQI(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)란 모든 대학교육 운영체계 전반에 대하여 지속해서 평가, 개선, 환류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.

제3조 (주관부서 및 위원회 구성) 지속적 교육품질 관리의 주관부서는 기획홍보처로 하며, 이에 대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“지속적 교육품질관리(CQI) 위원회”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 <개정2015.11.13.> <개정 2016.5.13.>

제4조 (위원회) 지속적 교육품질관리활동을 위한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대학운영 및 발전계획의 평가, 개선에 관한 사항
2. 교육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수립, 실행에 관한 사항
3. 대학 자체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사항
4. 대학의 행정부서 및 학과의 연도별 운영계획서 심의에 관한 사항
5. 대학발전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심의, 개선에 관한 사항
6. 기타 지속적 교육품질관리에 대하여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단장과 교수협의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.><개정 2016.5.13.>
2. 위원장은 기획홍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6.4.25.><개정 2016.5.13.>
3. 위촉직 위원은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1인 이상의

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12>

③ 정기회의는 매 학기 종료 시 1회 이상(연 2회 이상)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2018. 2. 12>

⑤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2016.2.18>

⑥ 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획홍보처에 간사를 둔다. <개정 2015.11.13> <개정 2016.5.13.>

⑦ 삭제 <2016.2.18>

제5조 (위원회 관리 및 자료제출 요구)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제반 활동과 지속적 교육품질관리 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, 취합, 분석한다.

① 기획홍보처장은 위원회의 활동 전반 및 위원의 임명, 위촉 등을 관리한다. <개정 2015.11.13> <개정 2016.5.13.>

② 기획홍보처는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연도별 계획수립 및 분석,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서 및 학과에 요구할 수 있으며, 행정부서 및 학과는 요구된 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2015.11.13.> <개정 2016.5.13.>

제6조 (평가 및 환류) 지속적 교육품질관리 활동과 위원회 활동으로 평가, 분석, 심의된 결과들 은 주요 정책 결정에 환류되도록 한다.

①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및 수정

② 대학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지표 개선

③ 교육과정 개편 등 학사운영 정책 개선

④ 연도별 행정부서 및 학과의 운영계획 수립 및 개선

⑤ 기타 대학 학사운영의 제반 방향설정 및 지침 설정

제6조의2(성과공유 및 확산) 대학은 매년 성과보고회 개최 등 교육품질관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2. 12>

제7조 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 (2013. 10. 28)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 11. 13)

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2. 18)

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4. 25.)

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6. 5. 13.)

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8. 2. 12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